

지부설치 규정

제1조 본 규정은 정관 및 규칙 제8장에 명시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.

제2조 설치목적은 전력전자 분야에 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보급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.

제3조 설치근거는 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.

제4조 지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1. 전력전자에 관한 연구 및 조사활동
2. 학술발표회 및 기술강연회
3. 현장 견학 및 시찰
4. 특정 문제나 주제에 관한 세미나, 심포지엄, 좌담회 등 개최
5. 총회, 체육대회 등 제 행사 개최
6. 연구장려 및 표창
7. 기타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8장 제12조에 따른다.

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8장 제13, 14조에 따른다.

제7조 지부설치가 확정된 지부에 대해서는 해당지부 회원이 당해년도에 납부한 일반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 지부규약, 예산결산 등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8장 제15, 16, 17, 18조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